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나2056572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1. A
	2. B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가합5026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4. 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 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74,698,630원을 0원으로,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525,810,766원을 1,100,569,396원으로 변경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1999. 11. 15.'을 '1999. 11. 15. 내지 2001. 3. 27. 무렵'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의 '1996년 이후이다.'를 '1996. 2. 14. 이후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6순위로'를 '5순위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을 제1호증의'를 '을 제1, 4호증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나.'를 '다.'로, 제6면 제12행의 '**나.**'를 '**다.**'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조세체권으로'를 '조세채권으로'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다음에 아래 마.항, 바.항을 추가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마. 한편 [redacted]시(처분청 [redacted]구청장)는 1987. 8. 8. E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redacted]시 N 등을 압류하였는바, 2012년경 [redacted]관리공사에게 위 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라.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redacted]관리공사는 2014. 9. 25. 위 토지 매각대금 중 360,715,675원을 피고에게 배분하였다.

바. E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기초문서들은 위와 같은 공매절차가 개시될 무렵에는 이미 기간 경과로 모두 폐기되었으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E에 대한 체납 내역을 전산자료(을 제4호증)로 보존하고 있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순번	세목	과세대상	납세고지	납기	세액합계(가산금 포함)
1	취득세 (부동산)	Q 외 3	1995. 11.	1995. 11. 30.	10,829,970원
2	재산세 (건축물)	R	1995. 6.	1995. 6. 30.	67,070원
3	종합토지세 (1994년)	S외 18	1994. 10.	1994. 10. 31.	310,444,330원
4	종합토지세 (1995년)	S외 18	1995. 10.	1995. 10. 31.	253,357,260원

』

2)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다음에 아래 나.항을 추가한다.

『나. 설령 E를 G의 과점주주로 보더라도, 제2차납세의무는 주납세의무와 별개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국세우선권이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제2차납세의무 납부통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E에 대하여 납부통지서에 의한 납부고지가 있었다거나, 위 납부통지서의 발송일이 망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2. 14. 이전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세채권들이 망 D의 1996. 2. 14.자 근저당권부 채권보다 지방세법상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 우선하여 피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에게 574,698,630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변경되어야 한다.』

3)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의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E를 G의 과점주주로 보더라도, E의 제2차납세의무는 G의 체납세액을 G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E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바, G의 채무액을 그대로 E의 채무액으로 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다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 및 이를 근거로 한 배당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우선권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우선배당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 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원칙적으로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지만, '지방세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성립된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구 지방세법이 규정한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관계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조세우선권을 인정하는 공익목적과 담보권의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 시점에서 담보권자가 조세채권의 존부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 규정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이 시행될 당시에 그 규정에서 정한 기준 시점이 도래한 경우에 그에 따라 우선관계를 정하여야 하고, 배당을 할 때에 그 규정이 개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우선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32483 판결).

위와 같은 법리는, 제2차납세의무자의 재산에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조세우선권 부여 기준일이 납세의무 성립일에서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라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들에다가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⑦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법정기일에 각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제로 E에게 납부통지를 하였을 개연성이 높고, 달리 이 사건 각 법정기일 기재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 및 그에 관한 각 납부통지의 발송은 이 사건 각 법정기일 무렵에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은 망 D의 1996.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보다 앞섰다고 볼 것이다.

① 먼저 E는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가 1987. 8. 8.자로, 피고가 1999. 11. 15.자로 각 압류 등기를 마쳤음에도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위 조세부과처분의 존부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배당절차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 이 점에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자인 E는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위 조세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현실로 체납액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성립 전 이미 G 및 E는 모두 무자력 상태였으므로 G의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E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각 조세채권 중 1994년 귀속 종합토지세의 법정기일에 관하여 보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7에 의하면 위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이 사건 법정기일과 같은 1994. 6. 1.로, 망 D의 위 1996. 2. 14.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섬은 의문이 없다.

④ 이 사건의 경우 각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약 20년 가량 경과하여 이 사건 각 조세채권에 대한 과세기초문서들이 모두 폐기된 현재 구체적으로 납부통지서 발송일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할 1999. 11. 15. 내지 2001. 3. 27. 무렵 당시에도 그와 같은 과세기초문서가 폐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그와 같은 압류등기는 본래의 과세기초문서를 토대로 마쳐졌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기간 경과로 위와 같은 문서는 폐기하더라도 본래의 과세기초문서에 따라 작성된 체납내역 등에 관한 전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남겨 두는 것이 과세관청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이라고 보인다.

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의 체납내역에 관하여 최초납기일에 대한 전산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배당 당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처분 당시에는 과세기초문서의 원본이 모두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산자료를 기초로 피고가 이 사건 배당 및 위 배분처분을 위하여 교부청구서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교부청구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⑥ 그리고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이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지만,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와 동시에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G 및 E는 모두 무자력 상태로, 그들의 파악 가능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1982년경부터 수많은 국세, 지방세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졌음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주된 납세의무자인 G에 대한 납세고지와 제2차납세의무자인 E에 대한 납부통지는 동시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체납내역 전산자료나 교부청구서에 기재된 법정기일 또는 납기일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G에 대한 법정기일과 같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하겠다.

⑦ 이 사건 각 조세 채권 중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1995년 귀속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9조와 제234조의 17에서 각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세채권에 관한 각 납세고지는 법정된 과세기준일과 마지막 납기일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 과세관청의 정상적인 업무처리로 보인다. 그런데 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은 위와 같은 정상적인 업무처리의 내용과도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1995년 귀속 취득세의 경우,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일은 취득시이고(법 제29조 제1항), 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법 제120조 제1항) 그와 같은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5-19

당 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법 제121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자력 상태에 빠진 G과 E가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세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더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위 취득세의 납세고지는 '1995. 11.', 취득세의 납기는 '1995. 11. 30.'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교부청구서상의 법정기일인 1995. 11. 10.에 그와 같은 납세고지가 있었을 것임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각 법정기일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단, 1994. 6. 1.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은 망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2. 14.보다 앞서므로,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은 구 지방세법 제31조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민유숙

판사 장윤선

판사 장한홍